

# 안양대학교 대학원 학칙

## 제 11 장 학위논문

**제44조(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)** 석사 또는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. 다만, 아래의 조건 이외에도 학과별로 추가하여 구비조건을 정할 수 있다.

- ①석사과정은 4~6학기, 박사과정은 6학기의 정규등록을 마쳐야 한다.
- ②부과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
**제45조(학위논문심사 및 심사위원)** 학위논문심사 및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은 「학위논문에 관한 규정」으로 정한다.